

2010. 10. 15.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발의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부. 끝.

선 견	의 장	3/89	결	부의장	
접수일자	2010. 10. 15. (화)	3301	재	국 장	7/30/
차 라 과	제천시의회		공	전문위원	
담당자	송경호		합	담당	안보미

발의자 : 조덕희 의원 (서명또는 날인)

조덕희  
외 3인

#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조적희	조적희	
김꽃잎	김꽃잎	
오선훈	오선훈	
이재우	이재우	

##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1447
------	------

발의연월일 : 2010. 10. 15.

발 의 자 : 조덕희 의원외 3인

### 1. 제안이유

- 제천시의 건강도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2.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
- 건강도시 조성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 (안 제 3조)
- 건강도시 사업의 주요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천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 6조 내지 제12조 )
- 시민의 건강도시 추진참여 및 의견제시권을 명문화함 (안 제13조)
- 건강도시사업 수행 기관·단체·개인에게 비용지원 및 표창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건강도시 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 3.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 방 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관련부서 검토
  - 기 간 : 2010. 8. 11(수) ~ 2010. 8. 31(화)(20일간)
  - 의견제출
    - 제출자 : 제천시장(보건소장)
    - 내용(붙임)
      -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진상 문제점 및 예산수반 등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음.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강도시 업무가 미래경영본부 한방경제과 분장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한방경제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 제159회 임시회(2009.5.20)에 제천시장(한방경제과)으로부터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부결한바 있고
    - 분장사무 총괄부서 및 보건소 관계부서와 협의로 금번 조례안은 보건소 소관으로 하고자함
- ### 4.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9조
- 붙임 : 1.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부.  
2.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끝.

##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2010. . .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 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시설,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사업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문가 집단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 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도시와 관련 되는 본부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관련부서 검토의견

- 조례안 :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발의의원 : 자치행정위원회 조덕희 의원
- 관련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협의사항
  - 관련부서 본 조례안의 추진상 문제점 및 예산 수반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 검토
  - 도 관련부서 사전검토

## 《검토사항》

### 가. 추진상 문제점

- 현재 건강도시 업무 추진부서는 미래경영본부 한방경제과에서 2008년도 WHO건강도시 가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강도시 업무가 미래경영본부 한방경제과 분장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한방경제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 미래경영본부 <한방경제과>

### 나. 기타관련 사항

- WHO 건강도시에 가입한 지자체는 2010년 7월 말 기준으로 55개소이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된 지자체는 50개소며, 가입 지자체중 인구 20만 이상 도시는 건강도시 담당 부서가 설치되어 관련 업무추진
- 2010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한방경제과에서 한방바이오과 내에 건강사업팀을 신설하는 (안)을 자치행정과 통보

## **다. 도 관련부서 사전검토 등**

- 현재 중앙부처 및 충북도청에도 건강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며, 지자체별 WHO 건강도시 가입 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건강도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현재 경남 창원시가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음.

## **라.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보건소 의견**

- 제천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덕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진상 문제점 및 예산수반 등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음.

## **마. 종합 검토의견**

-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의미 하므로,
- 보건소는 현재 건강도시 업무를 추진할 전담부서 및 인력이 없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강도시 업무를 전담할 부서 신설이 필요하며,
- 제천시 건강도시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등 건강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